

日本殖民地時期
중국어회화교재 《改正增補漢語獨學》(1911)에 나타난
일본의 대조선 교육정책 고찰*

蘇恩希**, 沈英淑***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본론
 - 1) 시대적 배경과 1910년대 일본의 교육정책
 - 2) 《漢語獨學》의 저자 및 판본 소개
 - 3) 중국어회화교재 《漢語獨學》 어휘에 반영된 식민지 교육정책
3. 나오는 말

1. 들어가는 말

본 논문은 1911년 宋憲奭이 편찬한 중국어회화교재 《改正增補漢語獨學》¹⁾을 저본으로, 1910년 조선총독부 소속 內務部學務局이 발표한 문서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解)를 근거로 日本殖民地時期 중국어회화교재 《漢語獨學》(1911)에 나타난 일본의 대조선 교육정책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이러한 연구 작업을 통하여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 중국어 교육에 대해 연구가 황무지인 학계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본 논문은 2007년도 숙명여대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 淑明女子大學校 中語中文學專攻 副教授

*** 淑明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中語中文專攻 在學

1) 이하 《漢語獨學》이라 칭한다.

2. 본론

1) 시대적 배경과 1910년대 일본의 교육정책

일제강점기는 일본이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병조약 체결을 강행함으로써, 일제의 한국식민화 침략이 완성되어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1945년 8·15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強占)하의 식민통치시기를 말한다. 한국이 일본에게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것을 의미하는 1910년 8월 22일에 체결되고 29일 반포된 전문 8조로 된 ‘한일합병조약’은 대한제국의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조선통감부 통감 테라우치에 의하여 조인되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²⁾

韓國皇帝陛下及日本國皇帝陛下는 兩國間の特殊히親密히關係를願히야互相幸福을增進히며東洋平和를永久히確保히기爲히야此目的을達고자히면韓國을日本國에併呑함에不如者로確信히야茲에兩國間에併呑條約을締結함으로決定히니爲此韓國皇帝陛下는內閣總理大臣李完用을日本國皇帝陛下는統監子爵寺內正毅를各其全權委員에任命함仍히야右全權委員은會同協議히야左開諸條를協定함

(일본국 황제 폐하 및 한국 황제 폐하는 양국간에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 이 목적을 달성코자 하면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택이라고 확신하고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하여 한국 황제 폐하는 내각 총리대신 이완용을, 일본국 황제 폐하는 통감 테라우치 마사타케 자작을 각각의 전권위원으로 임명한다. 그러므로 전권위원은 회동하여 협의하고 아래의 여러 조약을 협정한다.)

第一條

韓國皇帝陛下는韓國全部에關한一切統治權을完全且永久히日本國皇帝陛下에게讓與함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2) 자료 출처: <http://search.i815.or.kr> 독립기념관 원문이미지를 활자화 한 것임, 자료 번호: 6-001127-002, 자료제목: 강제 한일 합병조약 전문(국한문).

第二條

日本國皇帝陛下는前條에揭載한讓與를受諾하고且全然韓國을日本帝國에併吞함을承諾함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

第三條

日本國皇帝陛下는韓國皇帝陛下太皇帝陛下皇太子殿下並其后妃及後裔를 하야各其地位를應 하야相當한尊稱威嚴과及名譽를享用케 하고且此를保持함에十分한歲費를供給함을約함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 및 그 후비와 후손으로 하여금 각기의 그 지위에 상응하는 존칭과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며 또 이것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第四條

日本國皇帝陛下는前條以外的韓國皇族及其後裔에對 하야各相當한名譽及待遇를享有케 하고且此를維持하기에必要한資金을供與함을約함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손에게도 각기 상응하는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것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

第五條

日本國皇帝陛下는勳功이有한韓人으로서特히表彰함을適當할줄로認할者에對 하야榮爵을授하고且恩金을與함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게 영작을 수여하고 또 은금을 부여한다.)

第六條

日本國政府는前記併吞의結果로全然韓國의施政을擔任 하야該地에施行할法規遵守는韓人의身體及財産에對 하야十分한保護를與하고且其福利의增進을圖함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온전히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여 이 지역에서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을 충분히 보호해 주며 또 그들의 전체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

第七條

日本國政府는誠意忠實히新制度를尊重 하는韓人으로서相當한資格이有한者를事情이許할範圍에서韓國에在한帝國官吏에登用함

(일본국 정부는 성실하고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에서의 일본제국 관리로 등용한다.)

第八條

本條約은韓國皇帝陛下及日本國皇帝陛下의裁可를經한者니公布日로부터此를施行함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 공포일

로부터 시행한다.)

右證據로삼아兩全權委員은本條約에記名調印함이라

(우측을 근거로 삼아 두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

隆熙四年八月二十二日

內格總理大臣 李完用 [융희(隆熙) 4년 8월 22일 내각총리대신 이완용 (李完用)]

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二日

統監子爵 寺內正毅 [메이지(明治) 43년 8월 22일 통감(統監) 자작(子爵) 데라우치 마사타케 (寺內正毅)]

위 조약의 내용을 종합, 분석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제 1조는 한국 통치권의 일본양여, 제2조는 일본의 한국병합 승인, 제3조는 한국 황제 및 황태자에 대한 예우, 제4조 에서는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한 예우, 제5조에서는 한국 관료에 대한 은급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와 제7조 제8조에서는 일제정치에 순응하는 한국인 보호와 일제에 동조하는 한국인의 관리등용, 양국 황제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병합을 달성한 뒤 종래의 통감부를 폐지하고 보다 강력한 통치기구인 조선총독부를 설치하여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구체적인 한반도의 경영에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시작되는 조선총독부의 한반도 지배는 시대에 따라 다소 정책의 변동이 있었으나, 일관된 정책은 효율적인 식민 지배를 위한 탄압, 영구예속화를 위한 고유성(固有性) 말살 및 우민화(愚民化), 철저한 경제적 수탈 등이었다. 이러한 일제강점기 35년은 ① 제1기: 무단통치시기(1910~1919), ② 제2기: 문화정치시기(1919~1931), ③ 제3기: 병참기지화 및 전시동원시기(1931~1945.8.15)의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무단통치 시기는 헌병, 경찰의 총칼로 한국인 저항세력을 탄압하고 식민지 통치기반을 구축하던 시기이며, 문화정치기는 보통경찰 제도를 실시하고 언론 통제를 완화하는 한편 민족분열정책을 실시하던 시기이다. 3기는 황국신민화 정책을 실시하여 민족말살 정책을 도모하던 시기로 창씨개명, 신사참배, 황국신민서사 제창, 민족 언어 말살, 강제 징용 및 징병이 진행되었던 시기로 일본화 및 민족동화시기라 말할 수 있다.

국권을 상실시킨 후 일제는 한국에서 35년간³⁾ 한국 민족을 지구상에서 영원히 말살하기 위하여 말과 글을 빼앗고, 역사를 말살하고, 민족의 얼마저 없애기 위한 온갖 책동을 벌이며, 경제적 수탈까지도 감행했다. 이와 같은 식민지 정책에 일제가 가장 간교성을 드러낸 부분이 교육과 문화 정책이었다. 일제 식민통치자들은 교육의 본질과 그 힘의 위력을 알았기에 식민지로 삼은 한국인들의 지적, 인격적 성숙을 어떻게 해서든 방해하려 하였다. 따라서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만큼 교활하고 비인간적이었다. 이러한 일제의 한국에서 시행한 식민지주의 교육정책의 기초는 한마디로 한국 국민의 우민화 및 일본인화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일제 식민지주의 교육의 역사는 교육관계법령의 시행과 관련하여 크게

- ① 학부의 「학정참여관」에 의한 교육간섭기(1905.2~1906.8)
 - ② 대한제국 및 일제 통감부에 의한 「학교령」시행기 (1906.8~1911.8)
 - ③ 일제 조선총독부에 의한 「조선교육령」시행기 (1911.8~1945.8)
- 로 나눌 수 있다.

학부의 「학정참여관」에 의한 교육 간섭기와 대한제국 및 일제 통감부에 의한 「학교령」시행기는 일제식민주의 교육 부식기(扶植期)에 해당되며, 조선총독부에 의한 「조선교육령」시행기는 본격적인 일제 식민지주의 교육추진기(推進期)로서, 이는 다시,

- ① 제1차 조선교육령 시행기 (1911.8.22~1922.2.3)
 - ② 제2차 조선교육령 시행기 (1922.2.4~1938.3.2)
 - ③ 제3차 조선교육령 시행기 (1938.3.3~1943.3.30)
 - ④ 제4차 조선교육령 시행기 (1943.4.1~1945.8.15)
-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⁴⁾

일본은 1906년 2월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에서 친

3) 일제 침략기를 35년이나 40년이라 일컫는데, 이것은 합병기간만이나, 아니면 통감부 시기까지 포함하느냐의 문제이다. 본 논문은 35년이라 칭한다.

4) 鄭在哲, 《日帝의 對韓國殖民地教育政策史》, 서울, 一志社, 1985, pp.193-194.

일 교육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친일교육은 특히 교과수업을 통해서 강력히 실시토록 하였다. 통감부는 또한 학부로 하여금 사립학교령을 교과용 도서검정규정을 제정하여 사립학교에서도 학부가 편찬한 교과용 도서를 교과서로 사용케 함으로써 친일교육을 강화시켰다. 1908년 8월 친일내각은 “‘교과용도서 검정규정’을 공포하여 교과서에 관한 검인정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 ‘심사규정 기준’을 보면 ①자주 독립적인 민족의식 고취, ②항일 적 정신배양 등의 내용을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이로써 금서정책(禁書政策)의 성격을 알 수 있다.”⁵⁾

1909년 2월에는 법률 제6호로 출판법(出版法)을 공포하여 출판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 했는데, 사전 검열제도의 강화로 문서나 도서를 출판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원고를 제출시켜 검열을 하고, 지방장관을 경유 내부대신의 허가를 얻어야 했다. 또 사후 판금 제도를 도입해서 이미 출판된 저작물은 ‘안녕질서’, ‘풍속’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만들어 이에 걸리면 발매, 반포를 금지하고, 각판인본(刻版印本)을 압수해 갔다.⁶⁾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은 크게 네 차례에 걸쳐 제정, 공포된 ‘조선교육령(朝鮮教育令)’에 따라 시행되었다. 조선교육령은 일제가 각 시기별 시대적 상황과 정책적 목표에 따라 식민지 교육정책을 펴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일제의 식민지 교육정책의 특징을 시기별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1911년 8월23에 공포한 제1차 조선교육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第1款 朝鮮教育令

● 朝鮮教育令

明治四十四年八月 勅令第二百二十九號

명치 44년(1911) 8월 칙령 제229호

朕朝鮮教育令ヲ裁可シ茲ニ之ヲ公布セシム

집은 조선교육령을 재가하고 이에 이를 공포시킨다.

朝鮮教育令

조선교육령

5)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12. p.33.

6)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12. p.33.

第一章 綱 領 (강령)

- 第一條 朝鮮ニ於ケル朝鮮人ノ教育ハ本令ニ依ル
(조선에 있어서의 조선인의 교육은 본령에 따른다.)
- 第二條 教育ノ教育ニ關スル勅語ノ旨趣ニ基キ忠良ナル國民ヲ育成スルコトヲ本義トス
(교육은 교육에 관한 clr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
- 第三條 教育ハ時勢及民度ニ適合セシムルコトヲ期スヘシ
(교육은 시세와 民度(민도)에 적합하게 함을 기한다.)
- 第四條 教育ハ之ヲ大別シテ普通教育、實業教育及專門教育トス
(교육은 이를 크게 구별하여 보통교육, 실업교육 및 전문교육으로 한다.)
- 第五條 普通教育ハ普通ノ知識技能ヲ授ケテ國民タルノ性格ヲ養成シ國語ヲ普及スルコトヲ目的トス
(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가르치고, 특히 국민 된 성격을 함양하며, 국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 第六條 實業教育ハ農業、商業、工業等ニ關スル知識技能ヲ授クルコトヲ目的トス
(실업교육은 농업, 상업, 공업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第七條 專門教育ハ高等ノ學術技藝ヲ授クルコトヲ目的トス
(전문교육은 고등의 학술 기예를 가르침을 목적으로 한다.)

第二章 學 校 (학교)

- 第八條 普通學校ハ兒童ニ國民教育ノ基礎タル普通教育ヲ爲ス所ニシテ身體ノ發達ニ留意シ國語ヲ教ヘ德育ヲ施シ國民タルノ性格ヲ養成シ其ノ生活ニ必須ナル普通ノ知識技能ヲ授ク
(보통학교는 아동에게 국민교육의 기초가 되는 보통교육을 위한 곳으로서, 신체의 발달에 유의하고, 국어를 가르치며,德育을 시행하여 국민 된 성격을 양성하고, 그 생활에 필요한 보통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 第九條 普通學校ノ修業年限ハ四年トス但シ土地ノ狀況ニ依リ一年ヲ短縮スルコトヲ得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지방 상황에 따라 1년을 단축할 수 있다.)
- 第十條 普通學校ニ入學スルコトヲ得ル者ハ年齡八年以上ノ者トス
(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8세 이상의 자로 한다.)
- 第十一條 高等普通學校ハ男子ニ高等ノ普通教育ヲ爲ス所ニシテ常識ヲ養ヒ國民タルノ性格ヲ陶冶シ其ノ生活ニ有用ナル知識技能ヲ授ク
(고등보통학교는 남자에게 고등한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상식을 기르고, 국민 된 성격을 陶冶하며,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 第十二條 高等普通學校ノ修業年限ハ四年トス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 第十三條 高等普通學校ニ入學スルコトヲ得ル者ハ年齡十二年以上ニシテ修業年限四年ノ普通學校ヲ卒業シタル者又ハ之ト同等以上ノ學力ヲ有スル者トス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12세 이상으로서,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 第十四條 官立高等普通學校ニハ師範科又ハ教員速成科ヲ置キ普通學校ノ教員タルヘキ者ニ必要ナル教育ヲ爲スコトヲ得
(관립 고등보통학교에서는 사범과 또는 교원속성과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師範科ノ修業年限ハ一年教員速成科ノ修業年限ハ一年以內トス
(사범과의 수업 연한은 1년, 교원속성과의 수업연한은 1년 이내로 한다.)
師範科ニ入學スルコトヲ得ル者ハ高等普通學校ヲ卒業シタル者トシ教員速成科ニ入學スルコトヲ得ル者ハ年齡十六年以上ニシテ高等普通學校第二學年ノ課程ヲ修了シタル者又ハ之ト同等以上ノ學力ヲ有スル者トス
(사범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하고, 교원속성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16세 이상으로서 고등보통학교 2학년의 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 第十五條 女子高等普通學校ハ女子ニ高等ノ普通教育ヲ爲ス所ニシテ婦德ヲ養ヒ國民タルノ性格ヲ陶冶シ其ノ生活ニ有用ナル知識技能ヲ授ク
(여자 고등보통학교는 여자에게 고등한 보통교육을 하는 곳으로서, 婦德을 기르고, 국민 된 성격을 陶冶하며, 그 생활에 유용한 지식과 기능을 가르친다.)
- 第十六條 女子高等普通學校ノ修業年限ハ三年トス
(여자 고등보통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 第十七條 女子高等普通學校ニ入學スルコトヲ得ル者ハ年齡十二年以上ニシテ修業年限四年ノ普通學校ヲ卒業シタル者又ハ之ト同等以上ノ學力ヲ有スル者トス
(여자 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12세 이상으로서,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 第十八條 女子高等普通學校ニハ技藝科ヲ置キ年齡十二年以上ノ女子ニ對シ裁縫及手藝ヲ專修セシムルコトヲ得
(여자 고등보통학교에는 기예과를 두어 12세 이상의 여자에게 재봉 및 수예를 전수케 할 수 있다.)
技藝科ノ修業年限ハ三年以內トス
(기예과의 수업연한은 3년 이내로 한다.)
- 第十九條 官立女子高等普通學校ニハ師範科ヲ置キ普通學校ノ教員タルヘキ者ニ必要ナル教育ヲ爲スコトヲ得
(관립 여자 고등보통학교에 사범과를 두어 보통학교의 교원이 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師範科ノ修業年限ハ一年トス

(사범과의 수업연한은 1년으로 한다.)

師範科ニ入學スルコトヲ得ル者ハ女子高等普通學校ヲ卒業シタル者トス

(사범과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여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第二十條 實業學校ハ農業、商業、工業等ノ實業ニ従事セムトスル者ニ須要ナル教育ヲ爲ス所トス

(실업학교는 농업, 상업, 공업 등 실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는 곳으로 한다.)

第二十一條 實業學校ヲ分チテ農業學校、商業學校、工業學校及簡易實業學校トス

(실업학교를 나누어 농업학교, 상업학교, 공업학교 및 간이실업학교로 한다.)

第二十二條 實業學校ノ修業年限ハ二年乃至三年トス

(실업학교의 수업연한은 2년 내지 3년으로 한다.)

第二十三條 實業學校ニ入學スルコトヲ得ル者ハ年齢十二年以上ニシテ修業年限四年ノ普通學校ヲ卒業シタル者又ハ之ト同等以上ノ學力ヲ存スル者トス

(실업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나이 12세 이상으로서, 수업연한 4년의 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第二十四條 簡易實業學校ノ修業年限及入學資格ニ關シテハ前二條ノ規定ニ依ラス朝鮮總督之ヲ定ム

(간이실업학교의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에 관하여는 전 2조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조선총독이 정한다.)

第二十五條 專門學校ハ高等ノ學術技藝ヲ教授スル所トス

(전문학교는 고등한 학술과 기예를 교수하는 곳으로 한다.)

第二十六條 專門學校ノ修業年限ハ三年乃至四年トス

(전문학교의 수업연한은 3년 내지 4년으로 한다.)

第二十七條 專門學校ニ入學スルコトヲ得ル者ハ年齢十六年以上ニシテ高等普通學校ヲ卒業シタル者又ハ之ト同等以上ノ學力ヲ有スル者トス

(전문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16세 이상으로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한다.)

第二十八條 公立又ハ私立ノ普通學校、高等普通學校、女子高等普通學校、實業學校及專門學校ノ設置又ハ廢止ハ朝鮮總督ノ認可ヲ受クヘシ

(공립 또는 사립의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설치 또는 폐지는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第二十九條 普通學校、高等普通學校、女子高等普通學校、實業學校及專門學校ノ教科目及
其ノ課程、職員、教科書、授業科ニ關スル規定ハ朝鮮總督之ヲ定ム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과목 및 그 수업 과정, 직원, 교과서, 수업과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第三十條 本章ニ掲グル以外ノ學校ニ關シテハ朝鮮總督ノ定ムル所ニ依ル
(**본장에 열거한 이외의 학교에 관하여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附 則 (부록)

本令施行ノ期日ハ朝鮮總督之ヲ定ム

(본령 시행의 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從來ノ普通學校 高等學校及高等女學校ハ本令ニ依リ設置シタル普通學校、高等普通學校及女子高等普通學校ト看做シ從來ノ農業學校商業學校及實業補習學校ハ本令ニ依リ設置シタル農業學校、商業學校及簡易實業學校ト看做ス

(종래의 보통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여학교는 본령에 따라 설치한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및 여자고등보통학교로 간주하고, 종래의 농업학교, 상업학교 및 실업보습학교는 본령에 따라 설치된 농업학교, 상업학교 및 간이실업학교로 간주한다.)

本令施行ノ際朝鮮總督ハ現ニ存スル學校ニ關シ本令ニ拘ラス必要ナル事項ヲ定ナ又ハ必要ナル處分ヲ爲スコトヲ得

(본령 시행 시 조선총독은 현재 있는 학교에 관해서 본령에 구애됨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거나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朝鮮教育令施行期日

明治四十四年十月

總令第百九號

朝鮮教育令ハ明治四十四年十一月一日ヨリ之ヲ施行ス

조선교육령은 명치 44년 1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한다.

이와 같이 일본은 1911년 제1차 조선교육령을 제정. 공포하여 교육목적을 설정하고, 교육제도를 정비하여 그것을 실천하였다. 그들이 내세운 교육목적은 조선교육령 第二條 에 나타난 “教育ハ教育ニ關スル勅語ノ旨趣ニ基キ忠良ナル國民ヲ育成スルコトヲ本義トス”(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기초하여 충성스럽고 선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로 한다)는 것과 第三條에 나타난 “教育ハ時勢及民度ニ適合セシムルコトヲ期スヘシ”(교육은 시세와 민도에 적합하게 함을 기한다.)는 것, 그리고 보통교육에 있어서는 第五條에 나타난 “普通教育ハ普通ノ知識技能ヲ授ケテニ國民タルノ性格ヲ涵養シ國語ヲ普及スルコトヲ目的トス(보통교육은

보통의 지식 기능을 가르치고, 특히 국민 된 성격을 함양하며, 국어(일본어)를 보급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일제의 식민지 교육 정책은 조선인 학생을 식민 통치에 순응하도록 만들고, 식민지 공업화에 필요한 노동력을 양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천황에게 충성하는 선량한 국민을 육성’ 하는 데 교육의 주안점을 두었다. 따라서 보통학교 교육기간은 4년간으로 하였으며, 고등 교육기관인 대학은 설치하지 않았다.

1911년8월22 부터 1922년 2월3일 제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되기 까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교육정책은 일제의 식민통치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최소한의 사회적 능력을 갖춘 조선인을 짧은 시간에 가능한 많이 배출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며, 식민체제하에 주입식교육을 실천하기에 급급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식민지 통치정책을 변경하였다. 한민족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것만으로는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문화정치’라는 이름 아래 조선인에 대한 유희정책을 펼치게 되었다. 따라서 1920년 제 1차 조선교육령을 수정하여 보통학교 이수 연한을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하였다. 학제는 4년제로 주요 과목은 수신, 국어(일본어), 조선어, 및 한문 산수, 이과, 도화, 창가창, 1,2학년은 주당 26시간, 3,4 학년은 주당 27시간으로 배정하였다. 이중 국어(일본어)의 배정은 각 학년 주당 10시간으로 조선어 및 한문의 배에 가까운 비중을 두었다.

이렇듯 일본의 한민족 문화 말살정책과 소위 황국식민화 정책은 제도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립의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통제는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정책으로 반영되고, 이는 조선총독부의 교과서편찬 관련 자료에 구체화되어 있다. 7) 제1차 조선교육령 제29조와 제30조의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및 전문학교의 교과목 및 그 수업 과정, 직원, 교과서, 수업과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의 규정처럼 교과서에 관한 한 조선총독에게 전권이 있었다. 이는 “일본 본국의 강압적 지시를 對韓國민족, 對世界的으로 은폐하려는 것이며, 또 문제가 발생하면 현지에 책임을 물어 인사조치 등을 하는 척 함으로써 본국의 책임을 숨기려

7) 韓基彥·李啓鶴, 《日帝의 教科書政策에 관한 研究》,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pp.5-7.

는데 있었으며”, “자유로운 교재의 발간을 철저히 통제하려는데 있었다.”⁸⁾ 이와 같은 사실들은 1910년 조선총독부 소속 內務部學務局이 발포한 문서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並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並ニ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解)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及認可의 教科用圖書에 關한 教授上의 注意〉(附錄 祝祭日略解)⁹⁾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학무국 규정에는 황실·국호·연호·축제일·제도·일본과 조선 사이에 일어났던 역사상의 사건에 관한 것 등 교수 상의 주의할 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911년 宋憲奭이 편찬한 중국어회화교재 《漢語獨學》 어휘는 이러한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정책이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적 근거를 제시해줄 자료를 뒷받침하기 위해 먼저 《漢語獨學》의 시대성과 지역성을 반영하는 저자 및 판본을 소개하고자 한다.

2) 《漢語獨學》의 저자 및 판본 소개

《漢語獨學》(1911)은 宋憲奭이 편찬하였다. 현재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宋憲奭이 저술한 서적은 《初等自解日語文典》(1909), 《速成獨逸語自通》(1918), 《自習完壁支那語集成》(1921), 《速修漢語自通》(1922)¹⁰⁾, 《速修朝鮮語自通》(1926), 《麗末忠賢錄》(1928), 《美人의 一生》(1963)(1968)으로 총 9권이 있다. 또한 宋憲奭이 저술한 《初等自解日語文典》에 근거하면 그의 저서는 이밖에도 번역서를 포함하여 《精選日韓言文自通》(1909), 《通鑑諺解》(詳密註釋)(1914, 1917, 1927), 《伊蘇普의 空前格言》(譯, 1911, 1910)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의 소장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¹¹⁾

8)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2001. 12, p.47.

9) 원문은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並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並ニ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解) 이나, 별도로 ‘朝鮮譯文’이란 번역문을 만들어 같은 책자에 실었음.

10) 《速修漢語自通》의 발행연도와 발행일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책의 발행연도, 발행일부분의 파손으로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의 기록을 근거로 저작년대를 1922년이라 표기하였다.

11) 소은희·김미은 저, 〈일제강점기 중국어회화교재 《自習完壁支那語集成》과 《王先生速修中國

이러한 문헌들의 저작 년도에 근거해 볼 때 宋憲奭의 저술활동은 1910년대 부터 1960년대까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저작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 宋憲奭에 대한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¹²⁾

다만 그가 1910년 오성학교¹³⁾의 직원과 1915년 중앙학림¹⁴⁾의 국어교사를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이 중앙학림은 1915년 설립하였고, 일제하 식민지 불교교육의 중앙교육기관을 대표한 불교계의 사립학교였으며, 그 주도권은 조선 총독부에 달려 있었다.¹⁵⁾

위의 사실들로 미루어보아 작가 宋憲奭은 국어교사였으며, 특별히 중국어, 일어, 독일어 등 외국어에 능통한자였음을 알 수 있다.

宋憲奭이 편찬한 《漢語獨學》은 明治44년(1911년)에 新舊書林에서 초판 되었다. 이 책은 현재 선문대 중한 번역 문헌연구소,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 원광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서울여자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924년 廣益書館에서 출판된 교재¹⁶⁾를 연구저본으로 삼았고, 교재의 초판연도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이 책은 전체 1권 109페이지로 되어있고, 日帝 警務局의 기관지인 《경무월보(警務月報)》에는 송헌석의 《漢語獨學》이 일제의 허가를 받

語自通)에 나타난 사회문화상 연구), 중국문화연구 中國文化研究 第12輯, 2008, p.274.

12) 앞의 논문, p.275.

13) 오성학교의 모체(母體)는 서북학회가 1907년에 설립한 서북협성학교이며 박의수·강승규·정영수·강선보(2002:106)는 이 학교가 민족주의자들에 의하여 설립되고 민족 교육사에 크게 공헌한 대표적인 학교라고 소개하고 있다. 1910년 한일합방으로 서북학회가 해산되고 교명도 오성학교라 개칭하였으며, 1914년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교한다. (최덕교, 《한국잡지 백년》(3), 현암사, 2004, p.282)

14) 개화와 더불어 외국 선교사들과 일본의 승려들이 내한하여 선교와 포교활동을 활발히 함에 자극받아 정부는 조선조 500년간의 억불정책을 철회하게 되고, 불교계에서도 교계의 통일을 꾀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02년 36개조로 된 대한사찰령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서울의 원흥사(元興寺)를 수사찰(首寺刹)로 하고, 16개 지방 수사찰을 정하여 불교행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대한사찰령 29조에 의거하여 최초의 근대식학교인 명진학교(明進學校)가 원흥사에서 1906년에 개교하였다. 이 명진학교는 불교사범학교·불교교등강숙·중앙학림·불교전수학교·중앙불교전문학교·혜화전문학교를 거쳐 오늘날의 동국대학교로 발전하였다.

(박의수·강승규·정영수·강선보,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동문사, 2002, p.109)

15) 김광식, <중앙학림과 식민지불교의 근대성>,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제71호, 2003, pp.181-215.

16) 교재의 표지에는 출판연도를 알 수 없으나, 서울여자대학교 소장 자료 검색에서 1924년도라 하여 그대로 따랐고, 선문대 중한 번역 문헌연구소출판서문에는 1911년 편찬이라 기록되어져 있다.

은 출판물¹⁷⁾ 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제의 도서검열 인가를 거친 중국어회화 교재임과 편찬년도를 엿볼 수 있다.

《漢語獨學》을 편찬한 목적은 책 제목과 저자가 凡例에서 “本書는支那語學을獨習케 하기爲 意아 編成함”라 밝힌 바와 같이 중국어를 독학하기 위한 것이다. 총 60과로 구성되었고 부록에는 색인도 수록하여 각 과에서 어려운 글자를 깨우쳐 알도록 하였다. 교재의 형태를 보게 되면 각 쪽은 세로쓰기로 되어 있으며, 10행으로 나누어 칸을 구분하였다. 또한 각 행은 상, 하로 나누어 상반부에는 중국어를 쓰고, 그 옆에 좀 더 작은 글자로 중국어 성조 대신 당시의 한글 발음을 기재한 후 하반부에는 한국어로 번역을 하였다. 《漢語獨學》의 각 과의 내용을 도표로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표1〉 《漢語獨學》의 구성과 그 내용

課	內容	課	內容
1	數字	36	歇工
2	量詞	37	衣服
3	代名詞	38-39	飲食
4-20	問答	40	客店
21	動詞用法	41	官訪
22	天氣	42	問病
23	時節	43	訪友
24	年賀	44-45	行商
25	避暑	46	通刺
26	出外	47	收穫
27	賞景	48	問路
28	天長節	49	出租
29	歲末	50	喪事
30	訪問	51	商店
31	名詞(天文)	52	傭人
32	名詞(地文)	53-54	博覽會

17) 四月中發行許可ヲ與ヘタル出版物左ノ如シ (4월중 발행허가를 얻은 출판물은 왼쪽과 같다)

許可月日	名稱	著作者	發行者
四月二十六日	漢語獨學	宋憲奭	宋憲奭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警務月報》 제11호,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1911, p.133.

33	名詞(各種)	55	田舎
34	短語	56	悶暑
35	形容詞	57-60	常言

《漢語獨學》은 품사별 (숫자·양사·대명사·명사·형용사)로 어휘를 정리하였고, 짧고 긴 대화형식으로 문장 구성을 하였으며, 부록을 실어 각 과의 어려운 어휘를 주석하였다.

3) 중국어회화교재 《漢語獨學》 어휘에 반영된 식민지 교육정책

1911년 宋憲奭이 편찬한 중국어회화교재 《漢語獨學》에 반영된 어휘는, 1910년 조선총독부 소속 內務部學務局이 발표한 문서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解)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及認可의 教科用圖書에 關한 教授上의 注意〉(附錄 祝祭日略解)에 조선총독부의 한민족 문화 말살정책을 위한 교과서 정책이 구체화되어 실례로 입증되고 있다.

(1) 국호(朝鮮)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及認可의 教科用圖書에 關한 教授上의 注意〉)(附錄 祝祭日略解)에 국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歷史、地理、讀本等書에서李朝太祖-業을創호야國號를朝鮮이라定호고、降호야前太皇帝光武元年至호야大韓이라改稱호事를記호者-多호는、如斯호事項을教授호境遇에는該國號는明治四十三年八月二十九日勅令第三百十八號로써廢止호고、朝鮮이라稱호기로定호事를 知케 할사。”

(‘역사·지리·독본 등 교과서에서 李朝太祖의 업(業)을 創하여 국호를 朝鮮이라 정하고, 전 太皇帝 光武 元年(1897년)에 지(至)하여 大韓이라 이름을 바꾼 것을 기록한 것이 많으나 이러한 사항을 교수할 경우에는 이 국호(大韓)는 1910년 8월 29일 칙령 제 318호로 폐지하고, 朝鮮이라 부르기로 정한 것을 알게 한다.’)

(내무부 학무부,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解)〈朝鮮譯文〉, 1910, p.11.)

위의 자료를 통하여, 국호가 대한제국에서 조선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1911년에 출간된 중국어 회화교재 《漢語獨學》에서도 그 실례를 찾아 볼 수 있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① 凡例

本書는支那語學을獨習케 하기爲히編成함

支那語의音을漢字右邊에朝鮮文으로懸付히야自習의便宜를興히고下에朝鮮語로譯히야意味의如何함을詳釋함

支那語의發音에上聲去聲上平下平의四聲이有히나朝鮮文으로는完全히區別키難함으로其近似한音으로識別히얏스니覽者는極히注意함이可함
本書는六十課로分排히야會話와常言을表示히고下附錄에索引을添히야各課中難澁한字를參考解得케함

(본서는 지나어학(중국어)를 스스로 학습하기 위하여 편성하였다.

지나어의 음을 한자 우편에 조선문으로 표기하여 자습의 편의를 도모하고 아래에 조선어로 번역하여 의미가 어떠한지 상세하게 해석하였다. 지나어의 발음에 상성·거성·상평·하평 사성¹⁸⁾이 있으나 조선문으로는 완전히 구별하기 어려움으로 근사한 음으로 식별하였으니 훑어 보는 사람은 극히 주의하는 것이 좋다.

본서는 60과로 나누어 회화와 속담을 표시하고 아래의 부록에 색인을 첨부하여 각 과에서 어렵고 복잡한 글자를 참고하여 뜻을 깨쳐 알게 하였다.)

18) 상성(上聲)은 현대 중국어 성조의 제3성, 거성(去聲)은 제4성, 상평(上平)은 제1성, 하평(下平)은 제2성을 말한다.

② 是高麗的紅參 (漢 p.5.)

이는도선에홍삼이오

위의 예를 통해, 宋憲奭이 《漢語獨學》 凡例에서 “朝鮮語”와 “朝鮮文”으로 표기한 사실과 예2)에서 고려를 “도선(조선)으로 번역한 걸로 보아, 1910년 8월 22일 한일 합병조약의 체결과 1910년 8월29일 조선총독부 소속 內務部學務局이 발포한 문서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解)〉(〈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及認可의 教科用圖書에 關한 教授上의 注意〉(附錄 祝祭日略解)의 규정에 따라, 宋憲奭이 《漢語獨學》을 편찬한 1911년 4월에는 국호가 이미 대한제국에서 조선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1913년 高永完이 편찬한 중국어 회화교재 《華語精選》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③

A : 貴處是那一國 (華 p.194.)

귀하는 어느 나라에 사십니까?

B : 弊處是朝鮮京城

저는 조선 경성에 삽니다.

(2) 연호(明治)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及認可의 教科用圖書에 關한 教授上의 注意〉)(附錄 祝祭日略解)에 연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있다.

“歷史等書에 前韓國皇帝의 卽位와 共히 隆熙라 改元호 事를 記호 者- 有호 니, 如事호 事項을 教授호 境遇에 是 舊韓國의 年號 隆熙는 隆熙四年 八月二十九日을 限호 야 廢止되고, 同日로부터 以後는 明治를 用호 이 當然호 事를 知케 호 지라.”

(내무부 학무부,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

解)〈朝鮮譯文〉, 1910, p.12.)

(‘역사 등 책에 전 한국 황실의 즉위와 함께 융희(隆熙)라 고친 것이 있으니 이러한 사항을 가르칠 경우에는 舊韓國의 연호 융희는 융희4년(1910년) 8월 29일부터 폐지되고, 같은 날부터 이후에는 明治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 사실임을 알게 한다.’)

《漢語獨學》에서는 일본의 연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 現在明治多少年 (漢 p.15.)

지금은明治몇히오닛가

B : 現在明治四十四年

지금은 明治四十四年이오

明治(메이지)시대는 1868년(메이지원년)부터 메이지 천황이 사망한 1912년 7월 까지 약 45년 동안을 말하는데, 이처럼 宋憲奭이 《漢語獨學》을 편찬한 1911년 4월에는 일본의 연호가 중국어 회화교재 《漢語獨學》에 이미 기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舊韓國의 연호 隆熙는 隆熙4년(1910년) 8월 29일부터 폐지되고, 같은 날부터 이후에는 明治의 연호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사실임¹⁹⁾을 알도록 교수하였다.

(3) 수도(京城)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及認可의 教科用圖書에 關한 教授上的 注意〉(附錄 祝祭日略解)에는 國語讀本卷四第十五課에 실려있는 한국의 수도 漢城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漢城은 본래 韓國의 國都이나 한국은 지금 조선이라 부르며 大日本帝國의 일부로 되었기에 漢城은 이미 국도가 아니며 京城이라 고친다.’

《漢語獨學》의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 《朝鮮法令輯覽全》, 朝鮮總督府編纂.

① 我在京城做買賣 (漢 p.11.)

경성에서장사합니다

이렇게 국어독본에 실려 있는 한국의 수도 漢城이 1911년 출판된 중국어회화 교재 《漢語獨學》에 京城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축제일(天長節)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及認可의 教科用圖書에 關한 教授上의 注意〉(附錄 祝祭日略解))에 祝祭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讀本等中에 開國紀元節又는 乾元節에 關한 教材를 掲載한 者-有하니、然이는 舊韓國慶祝日은 既히 廢止된 者인즉 自今으로 此等의 教材는 教授치 말고、大日本帝國國民으로 應히 當然히 帝國의 祝祭日을 遵守할 事를 教히며、且本書의 附錄으로 祝祭日에 關한 一般의 注意와 各祝祭日의 要領을 授할 지라”

(‘讀本 등에 開國紀元節 또는 乾元節에 關한 것을 게재한 것이 있으나 舊韓國慶祝日은 즉시 폐지된 것인즉 지금을 기준으로 하여 이러한 교재는 가르치지 말고, 大日本帝國國民으로서 당연히 帝國의 祝祭日을 준수해야 할 것은 가르치며, 또한 본서의 부록으로 祝祭日略解에 의하여 祝祭日에 關한 일반적인 주의와 각 축제일의 요령을 가르칠 것.’이라)
(내무부 학무부,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解)〈朝鮮譯文〉, 1910, p.13.)

祝祭日略解에서는 四方拜(1월 1일) · 元始祭(1월 3일) · 孝明天皇祭(1월 30일) · 紀元節(2월 11일) · 神武天皇祭(4월 3일) · 天長節(11월 3일) · 神嘗祭(10월 17일) · 新

嘗祭(11월 23일)·春季皇靈祭(春分日)·秋季皇靈祭(秋分日).등을 축제일로 명시하고 이다.

“祝祭日에는 天皇의 御書宮中에서 祭祀를 行히시며、各官衙學校等은 休業하고、一般人民은 各戶에 國旗를 揭揚히야 其誠意를 表함으로 例를 삼나니. 自今朝鮮에서 内地와 同히此例에 依호者이나、併合後、日이 尙淺히니、從히야帝國祝祭日의 意義에 昭詳치 못호는者-不尠호터임으로、茲에 祝祭日略解를 製히야 注意書訂正表後에 添附히야、學校職員의 參考에 資게호노니. 職員은 此를 熟讀히야 學員學徒에게 其要領을 教授호는것은 勿論이 어니와、一般周圍의 各人에게 向히야도 祝祭日의 意義를 說明함을 望호노라.”

(‘축제일에는 천황께서 궁중에서 제사를 거행하고, 각 관가와 학교 등은 휴업하고 일반 민민은 집집마다 국기를 게양하여 그 성의를 표함으로 예로 삼는다. 이제부터 조선에서도 내지와 동일하게 이 예에 따라야 할 것이나, 병합 후 아직 시간이 짧으니, 따라서 제국축제일의 의의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자가 적지 않으니, 이에 축제일약해를 만들어서 주의서 訂正表 뒤에 첨부하여 학교직원의 참고에 도움이 되게 한다. 직원은 이것을 숙독하여 學員學徒에게 그 요령을 교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반 주의의 여러 사람에게도 축제일의 의의를 설명할 것을 희망한다.’)

(내무부 학무부,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並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並ニ字句訂正表> (附錄 祝祭日略解)> (朝鮮譯文), 1910, p.15.)

《漢語獨學》에 축제일로 제정된 天長節에 대하여 언급되어 있는데 그 예문은 아래와 같다.

①

A: 今兒多外頭兒家家門口兒都掛旗子哪 (漢 p.37.)

오늘에는 집마다 국기를 다렸구려

B: 不錯、今兒是十一月初三、是天長節

그렇소, 오늘은 十一月初三日 인디 天長節이올시다

A: 天長節是甚麼節呢

 턴장절은무슨축일이오닛가

B: 就是貴國的萬壽節、是皇上的壽誕日

 貴國으로는萬壽節인디天皇陛下의誕生日이올시다

위의 사실을 통하여 11월 3일은 일본 천황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天長節로 집집마다 국기 게양을 한다는 것과 天長節과 같은 것으로 옛 중국 천자(天子)의 탄생일인 萬壽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韓國 황제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乾元節을 폐지하고 일본 천황 탄생일을 기념하는 天長節을 축제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5) 황실(皇帝)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及認可의 教科用圖書에 관한 教授上의 注意〉)(附錄 祝祭日略解)에는 황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록하고 있다.

“舊學部檢定及認可圖書中前韓國皇室에關한記事를揭한者-有한니、如斯한教材는今日에그디로此를教授하기不可한은言을不俟할지니、教師는宜其左記各項의趣旨에依하여訂正教授할지라

一、日韓併合의結果로朝鮮人의奉戴한는皇室은大日本 天皇陛下、皇后陛下及皇族인事、

二、歷史等書中에現在 天皇陛下에關한記事에「日本國天皇께서는」 등으로記한敬稱을不用한者-有한니、如斯한境遇에는必「陛下」라는敬稱을附加하여「日本國天皇陛下의옵셔는」이라함과如히訂正教授할事、……”

(舊學部 검정 및 인가도서 가운데에는 전 한국 황실에 관한 기사를 쓴 것이 있으니, 이러한 교재는 지금 그대로 이것을 교수하는 것이 불가함은 말할 필요가 없으니, 교사는 마땅히 아래 각 항의 취지에 의하여 정정하여 교수해야 한다.

1. 日韓併합의 결과 조선인의 공경하여 높이 받드는 황실은 대일본 天皇陛下, 皇后陛下 및 황족이다……’

2. 역사 등 교과서에 현재 천황폐하에 관한 기사에 「일본국 천황게 셔는」 등으로 기재하여 경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폐하」라는 경칭을 더하여 「일본국천황폐하께옵서 는」 이라 하며, 이렇게 정정하여 교수하여야 한다. ……」

(내무부학무부,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 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 (附錄祝祭日略解) (朝鮮譯 文), 1910, p.10.)

1910년 한일합방 결과 조선인이 공경하고 높이 받들어야 할 황실은 일본 천황 이라고 명시한 내용이 1911년 출간된 중국어 회화교재 《漢語獨學》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예문은 다음과 같다.

①

A : 是的、日本の皇帝今年高壽了(漢 p.38)

그렇소, 日本皇帝陛下는今年에春秋가얼마시오

B : 今年六十歲了

今年에六十歲시오

A : 聽說是天聰最高

드르니 天聰이따우높히시다시오

B : 不錯、很有天聰、並且很知道下民的事情、左右的官都敬畏他

그렇소매우충면히시고또下民의시정을잘살피사左右의臣子가다敬畏 합니다

위 예문을 통해 일본 황제가 금년(1911년)에 60세이며 매우 총명하고, 좌우의 신하가 모두 경외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천황 숭배사상은 당시 한국인이었던 저자의 편찬의도와는 상관없이 1910년 8월 22일 체결, 29일 반포된 전문 8 조로 된 ‘일한합병조약’의 영향과 일제의 교과서 검열 정책에 의해 의도적으로 교 재에 실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3. 나오는 말

본 논문은 1911년 宋憲奭이 편찬한 중국어회화교재 《漢語獨學》을 저본으로, 1910년 조선총독부 소속 內務部學務局이 발포한 문서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解) 규정을 근거로, 日本殖民地時期 중국어회화교재 《改正增補漢語獨學全》(1911)에 나타난 일본의 대조선 교육정책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漢語獨學》에 나타난 어휘 분석 결과, 한국의 국호가 종전의 '大韓'에서 '朝鮮'으로 바뀌고, 연호에 있어서는 '隆熙'에서 '明治'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수도 '漢城'이 '京城'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으며, 한국 황제의 탄생일인 '乾元節'이 일본 황제의 탄생일인 '天長節'로 대체된 것도 알 수 있었다. 또한 《漢語獨學》의 본문 중 일본 천황 숭배사상이 실린 까닭은 아마도 당시 일제식민지하 피지배인의 신분으로 전락되어버린 宋憲奭이 자신의 교재 편찬의도와는 별개로, 1910년 8월 22일 체결되었으며 29일 반포된 전문 8조로 된 '일한합병조약의 영향과 일제의 교과서 검열 정책 때문에 출판 인허가를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교재에 실었음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일제는 조선을 강점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병조약의 체결과 같은 해 조선총독부 소속 內務部學務局이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ニ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ニ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解)를 발포하여 한민족을 사전포식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교육의 본질과 그 힘의 위력을 알았던 일본 식민통치자들은 한민족의 지적, 인격적 성숙을 말살시키기 위해 공사립의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한국국민을 우민화 및 일본인화 하려고 하였다. 그들의 교육내용에 대한 통제는 조선총독부의 교과서 정책으로 반영되고, 이는 조선총독부의 교과서편찬 관련 자료에 구체화되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일본인의 간교한 계획들은 1911년 편찬된 《改正增補漢語獨學》에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일본의 점진적 대조선인에 대한 식민지 교육정책은

1911년 제1차 교육령을 발표함으로써 더욱더 구체화 되었다. 이후 일본은 더욱더 악랄한 식민지 교육정책, 교과서 정책이라 교과서의 검열여부에 따라 반포 금지를 시켜나갔는데 이러한 시책은 이후 제2, 3, 4차 교육령을 발표하게 된다. 구한말 및 일제강점기 중국어회화 교재에 나타난 일본 식민지 교육정책을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화연구가 발표될 계획이다.

《參考文獻》

- 宋憲奭, 《改正增補漢語獨學》, 京城: 廣益書館, 1924.
- 宋憲奭 著, 朴在淵·金雅英 校注, 《改正增補漢語獨學》, 牙山: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2008.
- 高永完, 《高等官話 華語精選》, 京城: 普書館, 1913.
- 高永完 著, 李厚日·金雅英 校注, 《高等官話 華語精選》, 牙山: 鮮文大學校 中韓翻譯文獻研究所, 2008.
- 내무부 학무부, <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竝二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竝二字句訂正表(附錄 祝祭日略解)>, (朝鮮譯文), 1910.
- 김광식, <중앙학림과 식민지불교의 근대성>,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제 71호, 2003.
- 박의수·강승규·정영수·강선보, 《교육의 역사와 철학》, 서울: 동문사, 2002.
- 소은희·김미은 저, <일제강점기 중국어회화교재 《自習完壁支那語集成》과 《无先生速修中國語自通》에 나타난 사회문화상 연구>, 중국문화연구학회, 中國文化研究 第12輯, 2008.
- 鄭在哲, 《日帝의 對韓國植民地教育政策史》, 서울: 一志社, 1985.
-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警務月報》제11호, 朝鮮總督府 警務總監部, 1911.
- 재단법인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 2001. 12.
- 최덕교, 《한국잡지 백년》(3), 현암사, 2004.
- 韓基彦·李啓鶴, 《日帝의 教科書政策에 관한 研究》, 경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3.
- 함종규, 《한국교육과정 변천사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2003.

《中文提要》

本論文以日据時期漢語會話教材《改正增補漢語獨學》爲語料，根據1910年朝鮮總督府管轄的內務部學務局所公布的〈舊學部編纂普通學校用教科書並二舊學部檢定及認可ノ教科用圖書ニ關スル教授上ノ注意並二字句訂正表〉(附錄祝祭日略解)的內容，對這本教材所出現的詞匯進行考察，并對1910年代日本對韓國的教育政策進行全面的研究。

關鍵詞：日据時期，漢語會話教材，《改正增補漢語獨學》詞匯，日本對韓國的教育政策

이 논문은 2009년 5월 06일에 접수되어 2009년 6월 16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09년 6월 20일 편집회의에서 게재가 확정되었음.